

의안번호	제 311 호	의 결 사 항	원안 가전
의결년월일	1995. 12. 7. ( 제 40 회 )		



## 고성군의회의 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증개정조례(안)

발의자	이상근의원 외 3인
발의년월일	1995. 11. 27.

#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(안) 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//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5. 11. 21.

발의자 : 이상근 의원 외 3인

## 1. 제안 이유

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1995. 7. 1 대통령령 제14703호)으로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보완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2조제1항2호중 "일비"를 각각 "회의수당"으로 한다(안 제2조제1항2호)
- 나. 제4조제1항1호, 2호중 "일비"를 각각 "회의수당"으로 한다 (안 제4조제1항1호, 등2호)

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대통령령 제14703호 1995. 7. 1)

## 4. 본문

### 고성군조례 제 1 호

####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(안) 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의회 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2호중 "일비"라 를 "회의수당"이라로 하며, "일비를"을 "회의수당을"로 한다.

제4조제1항1호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하고, 동제2호중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정의) ①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"일비"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일비를</u> 말한다.</li> <li>3. 생략</li> </ol> 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일비의 2년분에</u> 상당한 금액</li> <li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일비의 2년분에</u> 상당한 금액</li> </ol>	<p>제2조 (정의) ① 현행과 동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행과 동일</li> <li>2. "회의수당"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<u>회의수당을</u> 말한다.</li> <li>3. 현행과 동일</li> </ol> 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 현행과 동일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회의수당의 2년분에</u> 상당한 금액</li> <li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<u>회의수당의 2년분에</u> 상당한 금액</li> </ol>